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2021.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7호로 2021년 7월 13일 오현숙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안 제5조 ~ 제6조)

다.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7조 ~ 제8조)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 제10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협의사항: 문화체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2021. 7. 16. ~ 7. 20./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전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 7. 15.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중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지방의회에 제안·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7페이지)

-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 신설
- ⇒ 「지자체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 제8조는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 규정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함.
- 안 제9조, 제10조는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 실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 제11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안전임.
- 종전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각각의 관리부서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 작성, 안내판 부착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 의무화 등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제출된 안전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